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. 6. 9 선고 2019가단510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0. 5. 26.

판결 선고 2020. 6. 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천안시 동남구 C 대 678㎡ 중 별지1 도면 표시 1, 2, 5, 6, 7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ㄱ) 부분 지상 임시숙소 건물 20㎡와 같은 도면 표시 2, 3, 4, 5,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ㄴ) 부분 지상 조립식패널 창고 12㎡'를 각 철거하고,
나. 천안시 동남구 C 대 678㎡를 인도하고,
다. 500,000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김애정

별지